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9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 3. 20
3. 정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판매회사가 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__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__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__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__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__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4. 투자신탁을 설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가목1)에	①집합투자업자는__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4. 투자신탁을 설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가목1)에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따른 투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1)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주식 매입에 의한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까지(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함) 및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간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자대상 비율의 적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본문 및 부분 후단에 따른 다른 비율(추가)을 매월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따른 투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까지(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함) 및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간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자대상 비율의 적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해지할 수 있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해지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해지할 수 있다. (삭 제)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해지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부칙	추 가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